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누115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1. A
2. B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○○

피고, 피항소인 ○○시 ○○출장소장
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. 2. 7. 선고 2023구합67270 판결

변 론 종 결 2024. 12. 18.

판 결 선 고 2025. 2. 12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

피고가 2022. 8. 5.에,

1.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,518,270원, 지방교육세 1,260,740원의,

2. 원고 B에 대하여 한,

가. ○○시 D아파트 E호를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 55,998,710원, 지방교육세 1,701,820원의,

나. ○○시 F아파트 G호를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 79,920,480원, 지방교육세 2,428,810원의,

다. ○○시 D아파트 H호를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 55,063,190원, 지방교육세 1,662,580원의,

3. 원고 C에 대하여 한,

가. ○○시 F아파트 I호를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 86,036,850원, 지방교육세 2,614,690원의,

나. ○○시 J아파트 K호를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 54,412,980원, 지방교육세 1,652,250원의

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,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



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,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.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).

2. 결 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판사 박○○

판사 송○○